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3-75 |
|----------|-------|

제출년월일 : 2013.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통·반장의 연령 상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고령자의 구정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반장 위촉자격 연령상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5항)

| | 개정 전 | 개정 후 |
|----|------------------|------------|
| 통장 |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 | 30세 이상의 주민 |
| 반장 |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 | 20세 이상의 주민 |

- 통·반장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 변경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4. 개정조례 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3. 8.16. ~ 9. 5.(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2013. 9. 12)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일부 개정안 1부
-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주민 자조의”를 “및”으로, “하부조직인”을 “하부 조직인”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6개반에서 10개반”을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40세대에서 80세대”를 “40세대 이상 80세대 이하”로 한다.

제3조 후단 중 “개·폐”를 “개편 또는 폐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를 “3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활동적인 자”를 “활동적인 사람”으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추천에 의하여”를 “추천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를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활동적인 자”를 “활동적인 사람”으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위촉된 해당 반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타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직무”를 “임무”로 한다.

제7조제1항제14호 중 “동행정”을 “동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를 “일시적으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 중 “성년자인”을 “성년인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분”을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기반상회는 월 1회 하고,”를 “정기반상회는”으로,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등”을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지 등”을 “잡지 등의”로 한다.

제10조의2 중 “제반비용”을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실비수당등)”을 “(실비수당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제5조제2항의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한다.

③ 통장이 임기 중 해촉되어 공석이 된 경우 신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⑤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

제4조(통장의 임기) ① -----
----- 두 차례만 -----

② < 삭제 >

③ -----

----- 제1항 -----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세 이상의 주민 -----
----- 활동적인 사람 -----
----- 인정되는 사람 ----- 추천으로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20세 이상의 주민 -----

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된 해당 반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구청장이, 해당 반장은 동장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반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생략)
3. 위촉받은 통장 또는 반장이 제7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 6. (생략)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13. (생략)
14.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 활동적인 사람 -----
----- 인정되는 사람 -----
----- 위촉한다. -----

⑥ -----

1. ----- 다른 지역 -----
2. (현행과 같음)
3. ----- 임무 -----
4. ~ 6. (현행과 같음)

제7조(임무) ① -----

1. ~ 13. (현행과 같음)
14. -----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또는 통·반장이 지명한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세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 하고, 매 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 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 동 행정 -----

② -----
----- 일시적으로 -----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반상회) ① -----
----- 성년인 사람을 -----

② -----
----- 구분하여 -----

③ 정기반상회는 -----
----- 필요
요시 -----

제10조(편의제공) ① -----

----- 사용 등 -----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잡지 등 구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의2(통·반장 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통·반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제11조(실비수당등) ①·② (생략)

② -----

----- 잡지 등의 -----

제10조의2(통·반장 교육) -----

----- 비용 -----

제11조(실비수당 등) ①·② (현행과 같음)